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311명

시험명 (시험일자)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합 계					311		
제1회 (3.6)	소 계				5		
	경력 경쟁	7급	수 의	수 의	5	도 3, 제주시 1, 서귀포시 1	필기시험 미시행
제2회 (3.22)	소 계				18		
	경력 경쟁	9급	해양수산	선 박 항 해	2	도 2	물리, 선박일반, 항해
			시설관리	시 설 관 리	8	도 6, 제주시 2	한국사, 사회
			운 전	운 전	8	도 3, 제주시 2, 서귀포시 2, 도의회 1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3회 (5.3)	소 계				21		
	경력 경쟁	9급	공 업	일반기계	5	도 3, 제주시 2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5	도 3, 제주시 2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8	도 3, 제주시 3, 서귀포시 2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3	제주시 1, 서귀포시 2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 계				4		
	※ 지역인재(8급·9급) 선발시험 시행계획 별도 공고 (공고일자: 2025.2.14.)				4		
제4회 (6.21.)	소 계				235		
	공개 경쟁	8급	간 호	간 호	3	도일팔 (제주시 2,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2	도일팔 (제주시 1,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시험명 (시험일자)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제4회 (6.21.)	공개 경쟁	9급	행 정	일반행정	107	도일팔 (제주시 51, 서귀포시 56)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일반행정 (장애인)	9	도일팔 (제주시 4, 서귀포시 5)	
				일반행정 (저소득)	4	도일팔 (제주시 2, 서귀포시 2)	
			세 무	지 방 세	6	도일팔 (제주시 2, 서귀포시 4)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 산	전 산	3	도일팔 (제주시 1,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직업상담	직업상담	2	도일팔 (도 2)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 심리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6	도일팔 (제주시 4,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인)	2	도일팔 (제주시 1, 서귀포시 1)	
				사회복지 (저소득)	1	도일팔 (제주시 1)	
			사 서	사 서	5	도일팔 (제주시 1, 서귀포시 4)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 기	속 기	1	도의회 1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 업	일반기계	6	도일팔 (제주시 5,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7	도일팔 (제주시 5,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1	도일팔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	6	도일팔 (제주시 2, 서귀포시 4)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일반농업 (장애인)	1	도일팔 (제주시 1)	
				축 산	3	도일팔 (제주시 1,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6	도일팔 (제주시 4,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자원 (장애인)	1	도일팔 (서귀포시 1)	
			해양수산	일반수산	3	도일팔 (제주시 2,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9	도일팔 (제주시 4, 서귀포시 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7	도일팔 (제주시 5,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환경 (장애인)	1	도일팔 (제주시 1)	
			시 설	도시계획	1	도일팔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19	도일팔 (제주시 10, 서귀포시 9)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험명 (시험일자)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건 축	7	도일말 (제주시 3, 서귀포시 4)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 축 (장애인)	1	도일말 (제주시 1)	
			방 재 안전	방 재 안전	2	도일말 (제주시 1,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 송 통신	통 신 기 술	3	도일말 (제주시 1,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5회 (9.6)	소 계				16		
	경력 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 예 일반	3	도 3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농업연구	원 예	1	도 1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축 산	1	도 1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보건연구	공 중 보건	1	도 1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환경연구	환 경	2	도 2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지도사	농 촌 지도	농 업	4	도 4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 촌 지도	원 예	4	도 4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제6회 (11.1)	소 계				3		
	공개 경쟁	7급	행 정	행 정	3	도 3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소 계				9		
	경력 경쟁	연구사	녹지연구	임 업	1	도 1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해양수산 연구	해양 환경	1	도 1	수산학개론, 일반해양학, 화학해양학
				수산공학	1	도 1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어장학
	고졸 경력 경쟁	9급	공 업	일반기계	1	제주시 1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농 업	일반농업	1	서귀포시 1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해양수산			일반수산	1	제주시 1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1	서귀포시 1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2	제주시 1, 서귀포시 1	물리, 토목일반, 측량	

※ 음영표시된 과목은 도 자체 출제 과목으로 비공개합니다.

※ 도일괄은 해당 구분모집 단위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별도 배정기준에 따라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의 근무기관
배정방식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7급·8급·9급, 연구사·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제1회(수의7급) 임용시험은 12차 필기시험 미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시/장소 등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해당 검사(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고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제3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등) 심사]

다.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명	직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8·9급	5과목	110분 (10:00 ~ 11:50)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7급	5과목	100분 (10:00 ~ 11:40)

※ 2025년부터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 전환에 따라,
시험시간이 100분에서 110분(10:00~11:50)으로 변경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3과목	60분 (10:00 ~ 11:00)
		시설관리, 운전	2과목	40분 (10:00 ~ 10:40)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기계·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건축)	2과목	40분 (10:00 ~ 10:40)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학예연구·토건연구□ 환경연구·농업연구□ 농촌지도	3과목	60분 (10:00 ~ 11:00)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연구사	녹지연구 해양수산연구□ 고졸경력경쟁(9급)	3과목	60분 (10:00 ~ 11:00)

3. 출제범위

가.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이 확정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예시) 9급 임용 필기시험이 2025. 6. 21.인 경우, 2025. 4. 30. 현재가 기준이 됨.

나.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다.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에서 출제됩니다.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과목

직급	대상 과목
7급	경제학원론, 국어(한문 포함),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행정법, 행정학, 헌법
8·9급	간호관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화학, 공중보건, 국어, 기계설계, 기계일반, 보건행정, 사회복지학개론, 식용작물, 안전관리론, 영어, 응용역학개론, 임업경영, 자료조직개론, 재난관리론, 재배학개론,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정보보호론, 정보봉사개론, 조림, 지방세법, 지역사회간호, 컴퓨터일반, 토목설계, 통신이론,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환경공학개론, 화학, 화학공학일반,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고졸 경력 경쟁 9급	기계일반, 기계제도, 물리, 생물, 재배, 전기기기, 전기이론, 측량, 토목일반

다.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 위탁출제 과목 외는 우리 도에서 자체출제하고, 자체출제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생략)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성별: 제한 없음

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라. 거주지 제한: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 ①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②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필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기준 유효해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류)	자격증 □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제2회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항해사 6급 이상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을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제3회	9급	공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업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시설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험명	직급	직렬(류)	자격증 □면허증 및 학력제한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제4회	8급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 (사서)	1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
제5회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 (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험명	직급	직렬(류)	자격증 □면허증 및 학력제한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촌지도 (원예)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회	연구사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수산연구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고졸 9급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농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 해양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보건 (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 2)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학사학위 비전공자)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3)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 1] 서식 참고)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 대학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함)
-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붙임 1] 서식 참고)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붙임 1]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6. 제1회 지방공무원(수의7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2.27.(목) ~ 2.28.(금) 09:00~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단,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2025. 2. 28. 18시) 등기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서류 도착 여부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2025. 2. 27.(목) 전에 도착하여도 유효함

다.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3~6225)

라. **제출서류**

- ① 자기소개서(붙임 5 서식, A4 2매 이내) 5부.
- ② 이력서(붙임 5 서식) 1부.
- ③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유의사항**

- ①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③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7.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기준)

나.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 이라고 기재된 차량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등 제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자동차의 종류>

-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 소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다.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 ②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③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붙임 6】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함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8.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가.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추천대상자 자격기준(학교장 추천에 의함)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특성화 학과)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25.7.4.기준) 포함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졸업자인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이내인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성적요건

1)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전 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2)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 및 재학생의 경우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기준,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함)

-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단,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8.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기회 부여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6. 30.(월) ~ 7. 4.(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방법: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재학중)학교장에게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자 중 ‘가’와 ‘나’ 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마’ 항의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학교별 일괄제출(개별제출 불가)

※ 수험생 1명이 두 개의 직류에 추천(응시) 불가

-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마. 제출서류 목록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1부.([붙임 2] 서식 참고)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의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 1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바. 유의사항

- 추천서를 제출한 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기간(2025. 7. 21.(월) ~ 7. 25.(금))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접수방법은 12번 응시원서접수 항목 참조)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청각 장애인	352	-	350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등급)’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구분의 ‘청각 장애인’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는 [붙임 7] 참조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2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0.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2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익, 텡스, 지텔프: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이 아님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2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마이페이지-영어시험 성적제출’ 메뉴를 통해 추가등록기간[2025.10.27.(월) ~ 10.31.(금)] 내에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제1·2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면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2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마이페이지-한국사시험 성적제출’ 메뉴를 통해 추가등록기간[2025.10.27.(월) ~ 10.31.(금)] 내에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11.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3]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지원)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복지팀 또는 관련 복지부서)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시험방법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의7급)	경력경쟁	2.17.(월) ~ 2.25.(화)	2.17.(월) ~ 2.26.(수)	서류전형	※서류접수 2.27.~2.28.	※서류심사 3.6.(목)	3.7.(금)
				인성검사	3.7.(금)	3.11.(화)	
				면접시험	3.7.(금)	3.13.(목)	3.17.(월)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설관리, 운전, 선박직)	경력경쟁	2.24.(월) ~ 2.28.(금)	2.24.(월) ~ 3.3.(월)	필기시험	3.11.(화)	3.22.(토)	4.9.(수)
				인성검사	4.9.(수)	4.15.(화)	
				면접시험	4.9.(수)	4.21.(월)	5.8.(목)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지역인재, 기술직9급)	경력경쟁	3.12.(수) ~ 3.18.(화) [지역인재] 3.24.~ 28.	3.12.(수) ~ 3.20.(목) [지역인재] 3.24.~ 31.	필기시험	4.22.(화)	5.3.(토)	5.23.(금)
				인성검사	5.23.(금)	5.30.(금)	
				면접시험	5.23.(금)	6.12.(목)	6.24.(화)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8·9급 공채)	공개경쟁	3.24.(월) ~ 3.28.(금)	3.24.(월) ~ 3.31.(월)	필기시험	6.3.(화)	6.21.(토)	7.15.(화)
				인성검사	7.15.(화)	8.2.(토)	
				면접시험	7.15.(화)	8.11.(월) ~ 13.(수)	8.22.(금)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연구·지도사)	경력경쟁	6.30.(월) ~ 7.4.(금)	6.30.(월) ~ 7.7.(월)	필기시험	8.5.(화)	9.6.(토)	9.26.(금)
				인성검사	9.26.(금)	10.15.(수)	
				면접시험	9.26.(금)	10.23.(목)	10.27.(월)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행정7급, 연구사, 고졸9급)	공개경쟁, 경력경쟁	7.21.(월) ~ 7.25.(금)	7.21.(월) ~ 7.28.(월)	필기시험	10.2.(목)	11.1.(토)	11.21.(금)
				인성검사	11.21.(금)	12.10.(수)	
				면접시험	11.21.(금)	12.16.(화)	12.19.(금)
	(고졸)학교장 추천기간: 6.30.(월) ~ 7.4.(금) ※연구(지도)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제출 일정 공지						
장애인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24.(월) ~ 2.28.(금) ※ 2.28.(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12.(수) ~ 3.18.(화) ※ 3.18.(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지역인재		3.24.(월) ~ 3.28.(금) ※ 3.28.(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30.(월) ~ 7.4.(금) ※ 7.4.(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7.21.(월) ~ 7.25.(금) ※ 7.25.(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원서접수 추가 취소기간(시험장소 공고일 이틀전 3일간) 운영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될 예정입니다.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4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시험의 경우 일자별 직렬별 임용기관 응시자 지원현황이 접수일 기준 익일 11시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의 ‘일자리/중소기업→시험채용정보→지방공무원→시험통계정보’란에 공고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의 ‘일자리/중소기업→시험·채용정보→지방공무원’란에 공고합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다. 응시수수료: 8급·9급은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되며,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크기 3.5cm × 4.5cm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 내(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의 변경은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 또는 추가 취소일(시험장소 공고일 이틀전 3일간)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 (5)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 가능합니다.
- (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7)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하여야 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접수절차를 누락하는 등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8)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이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9)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서는 별도의 제출기간('25.6.30. ~ 7.4.)내 학교별 일괄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적용대상: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각 직류별 임용예정기관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가. 적용대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 나. 실시방법: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처리(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1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일을 포함한 3일 이내(주말포함)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 플렉스, 한어수평고시, JPT, JLPT)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시험명	등록기간(기간 중 상시 등록 가능)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25. 3. 22.(토) 09:00 ~ 3. 24.(월) 18:00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25. 5. 3.(토) 09:00 ~ 5. 5.(월) 18:00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25. 6. 21.(토) 09:00 ~ 6. 23.(월) 18:00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25. 9. 6.(토) 09:00 ~ 9. 8.(월) 18:00
제6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025. 11. 1.(토) 09:00 ~ 11. 3.(월) 18:00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비율(10%, 5%, 3%)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합니다.

- (3) 원서접수 시 어학능력 성적을 포함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어학 가산점, 수화통역사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부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 직급별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 직급별 직류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14)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① 행정직군: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 ②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연구사, 지도사		8 4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 응시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붙임 4]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합니다.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합산 가산되며, 동일 기술(기능) 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다만,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2)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KBS한국어능력시험(KLT): 1급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1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토익(TOEIC): 900점 이상 □토플(TOEFL):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텝스(TEPS): 828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471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1의 85점 이상 □오픽(OPIC): AL 이상(영어, 일본어, 중국어) □플렉스(FLEX):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KLT):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2급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급 □토익(TOEIC): 850점 이상 □토플(TOEFL):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텝스(TEPS): 779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437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83점 이상 □오픽(OPIC): IM3 이상(영어, 중국어), IH 이상(일본어) □플렉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21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 이상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1%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3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 토익(TOEIC): 775점 이상 ☐ 토플(TOEFL):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텡스(TEPS): 700점 이상<또는 뉴텡스(New TEPS): 386점 이상> ☐ 지텔프(G-TELP): Level 2의 73점 이상 ☐ 오픽(OPIC): IM2 이상(영어, 중국어), IM3 이상(일본어) ☐ 플렉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180점 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640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 이상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 수화통역사 자격증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성적만 가산합니다.

※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한 3일 이내(주말포함)에 어학점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입력**해야합니다. 영어능력검정 시험 성적 사전등록(7급)과는 별도로 처리됨에 따라, 시험별 입력기간에 가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3%(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 및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합니다.

1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이 미흡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3~6225)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관련학과 전공증명 및 총장추천서(서식)
- 2.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4. 가산 대상 자격증
 - 5. 제1회(수의7급) 응시자 제출 서식
 - 6. 제2회(운전9급)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서식
 - 7.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안내
 - 8. 2025년~2026년 달라지는 사항 안내